##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2005 · 1 · 11 조례 제 529호 일부개정 2021 · 8 · 3 조례 제17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보행권"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2. "보행환경"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·감각적·정 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.
- 3. "보행약자"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 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책무)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
  - 2. 보행환경시설의 유지에 관한사항
  - 3.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  -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,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필요시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보행환경의 개선목표
- 2.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
- 3.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· 단계별 사업계획
- 4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선정 및 재원조달방법
- 5.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- 3.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  - 4.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
  - 2. 이천시의회 의원
  - 3. 보행환경·시공분야 전문가
  - 4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  - 5.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-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·8·3]

제8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워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21·8·3]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1·8·3]
- 제10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와 서기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관련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자로 한다.

「본조신설 2021·8·3〕

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「본조신설 2021·8·3〕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·8·3]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)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내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칙〈2021 · 8 · 3 조례 제173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